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1) 상정
 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1) 보류
 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8) 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없 음 - 위원회 보류 안건 계속심사)

가. 제안이유

(앙건1) 舊 전자도서란 부지 매각

- 원미구 심곡동 454-1의 舊점자도서관 건물은 196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낡고 노후 되어 안전상태 등을 고려, 점자도서관 및 경로당 등을 이전 조치하였으며,
-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안임.

(안건2) 시유지(원미구 중동 1153번지)매각

○ 원미구 중동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였으나 2005년 7월

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되었고 그동안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어 왔으나,

-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, 매각 추진코자 함.
- 매각사유
- 문화와 경제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호텔, 컨벤션센터, 문화.체육시설 등 랜드마크적 시설입지로 국제행사유치 및 도시민의 문화공간 제공과
-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문예회관 부지 매입과 건립,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함.

(안건3) 국・공유지 교환

○ 국가기관(경찰청)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우리시에서 점유 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여 국·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(안건4) 장애인 보호작업장 샌묵자니 아파트형 공장매입

- 현재 임차한 건물은 막대한 임대료(임대보증금 4억원, 월임대료 200만원) 및 건물주의 지속적인 임대료 증액요구에 따라 이전이 필요하며, 기존 임대건물(상가 2, 3층)은 생산설비 구축에 제약이 있음.
-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(5종→2종)에 따라 근로 장애인에게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여 장애인에게 최적의 고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(안건5) 서커스 상석공연강 건업공사

○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시와 (주)동춘엔터테인먼트 간

에 협약을 체결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'08.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 책사유로 중지됨에 따라 '08. 12. 15일 협약 해제·해지를 하게 되었음.

- 이에 따라 시공사인 (주)준 건설에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성급만 지급받고 동춘 에서 미 정산된 기성급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부천시 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권고 받게 되었으며,
- 기성급 정산을 하지 않고는 시공사인 (주)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른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, 조속한 공사 준공 및 현안 민원을 해결하고자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기성급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 변경하는 심의 안건임.

나. 주요골자

(안건1) 舊 전자도서란 부지 매각

- 매각대상
- 위 치 : 부천 원미구 심곡동 454-1번지
- 대지면적 : 596 m²
- 건축연면적 및 구조 : 482.65m²/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(지상2층)
- 도시계획 : 준 주거지역
- 공시지가: 1,305,240천원 ※건물가 = 32,586천원(시가표준액)
- 매각방법
 - 공개경쟁 입찰매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)
 - 입찰방법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인터넷 입찰(온비드)
 - 낙찰자 결정 :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
 - 매각대금납부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- 향후추진계획
 - 감정평가 실시 : 2009. 9월중

- 입찰공고 및 홍보 : 2009. 10월중

- 공개경쟁입찰 및 매매계약체결 : 2009. 11월중

(안건2) 시유지(원미구 중동 1153번지)매각

○ 매각대상부지

위 치	면적(m²)	용도구분		.7 1 7 7	
T 1			건폐율	용적율	공시지가
원미구		호텔등을	50%이하	기즈 9 저 Q-G000/히뒴	
중동	15,474.6	포함한	5층이상부	기준용적율600%이하 상한용적율1000%이하	70,718백만원
1153번지		복합용도	30%이하	[경 안공식표1000%이다.	

○ 건축물용도

불허용도 (H)	 ·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상복합 제외) ·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관광호텔이외의 숙박시설 ·위락시설(※ 호텔의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은 가능)
허용용도	•불허용도이외의 용도 허용
권장용도	· 판매 및 영업시설, 업무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 · 교육 및 연구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
지정용도 (I)	• 관광호텔(객실 120실이상, 복합컨벤션센터포함, 특2등급수준이상) ※호텔의 위치는 계남대로변 측에 배치 • 운동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총 지상층 건축물연면적 5% 이상 확보
공동주택비율	·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

○ 매각방법

- 공개경쟁 입찰매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)
 - 입찰방법 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인터넷 입찰(온비드)
 - 낙찰자 결정 :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
 - 매각대금의 납부 등(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조례 제4조)

○ 매각방침

-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중동 1153, 1155번지를 1건 으로 매각(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따른 호텔부지 등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추진)
- 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 매각
- 용도의 변경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1조에 의거 행정 재산인 중동1153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함

(안건3) 국・공유지 교환

○ 교환재산 현황

7,11		지목	면적(m²)		재산평가액(천원)			이용상태	소유자
구분	소재지		계	면적	계	단가 (m²당)	금액		
공유 재산	소사본동 51	대	500	500	920,000	1,840	920,000	소사지구대 청 사	부천시
	춘의동 226-11	도로	2,186.4 -2,186.4	631	680,134.4	360	227,160	부천종합 운동장 원미레포츠 공 원 (구)소사구청 공영주차장 한울빛 도서관	국 (경찰청)
국유 재산	원미동 14-15	유지		897		44.2	39,647.4		
	송내동 594-5	대		2,729.4 중174		1,010	175,740		
	송내동 594-6	대		85.4		1,030	87,962		
	소사본동 367-29	잡종		5.5		375	2,062.5		
	소사본동 367-40	잡종		393.5		375	147,562.5		

※재산평가액은 2009년도 공시지가임.

○ 교환방법

-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결정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)
- 교환 차액금은 금전으로 정산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)
- 교환 차액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납부

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)

○ 향후 추진계획

○ 2009. 09 : 감정평가 실시, 2009. 10 : 교환 및 소유권 이전

(안건4) 장애인 보호작업장 샌묵자니아파트형 공장매입

○ 현재 입주건물

- 위 치 : 원미구 상동 242-8 한성빌딩 2, 3층

- 면 적 : 536.72m² (2층 직업재활시설, 3층 자립작업장)

- 이용인원 : 장애인 35명, 직원 5명

- 임대기간 : 1994. 11. 15 - 2010. 3. 31

- 임대금액: 임대보증금 4억원, 월임대료 200만원

○ 취득계획

- 취득대상 : 오정구 삼정동 36-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차 302동 404호

- 건물면적 : 963.94m²(전용면적 600.02m², 공용면적 363.94m²)

- 활용계획: 사무실, 작업장, 자원봉사자실, 프로그램실, 식당 등

- 매입예정가격 : 1,120,400천원 (분양가격 30,000천원의 할인)

- 취득방법 : 감정평가 후 협의취득

○ 매입 및 이전계획 개요

시 설 (종		샘물자리 (장애인직업재활시설)	자립작업장 (장애인작업장)			
면	적	268.36 m²	268.36 m²			
이용현황		직 원:3명 장애인:정원25명	직 원:2명 장애인:정원10명			
주	소	원미구 상동 242-8 한성빌딩 2,3층 - 임대료:보증금 4억원 - 임대료 및 순수관리비 300만원/월 - 임대기간:2008.4.1-2010.3.31				
운	졍	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				
주요시설 사무실,작업장,자원봉사실,프로그램						

샘물자리와 자립작업장 통합운영



- 목 적
·최적의 근로 환경 제공 ·임대료 예산 절감

·생산장비구축

샘물자리
(장애인직업재활시설)
600.02 m²
직 원:7명
장애인:35명
오정구 삼정동 36-1
테크노파크 쌍용3차
302동 404호
매입비용: 1, 120,400천원
좌 동
좌 동

○ 취득 필요성

- 건물주(임대인)는 현 샘물자리가 부천시 에서 임대중이며, 투자한 비용이 많고 장애인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음.
 - ⇒ 년간 36,000천원(임대료 24,000천원, 순수관리비 12,000천원)
- 2년마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에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전을 요구하며, 층별 매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임.
- 샘물자리와 자립작업장의 연간 정부보조금은 260,611천원이며 매년 시비 추가부담이 증가하고 있음(2009년 22,559천원 추가 부담).
- 직업재활 시설 유형개편(5종 ⇒ 2종)에 따라 근로 장애인에게
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
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(안건5) 서커스 상석공연장 건업공사

- 사업목적
- 영상문화단지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공연을 유치함으로 주변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
-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공연을 함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.
- 사업개요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-2(영상문화단지내)
- 부지 및 건축 연면적 : 11.371㎡, 6.815㎡(지하2층 지상3층)
- 시설규모 : 객석수 1,181석
- 사업기간 : 2003. 01~ 2010. 08(당초 2003. 1월~ 2005. 5월)
-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부결: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(2009. 05)
-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부결: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(2009, 07)
- 총사업비 : 10,945백만원
- 당초 : 도비 1,000백만원, 시비 2,000백만원, 민간자본 7,945백만원)
- 변경 : 도비 1,000백만원, 시비 9,945백만원, 민간자본 0 백만원)

※ 당초 사업시행자인 동춘에서 7,945백만원을 투자후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협약사업이었으나 (주)동춘의 자부담능력이 없어 협약 해제·해지에 따라 시에서 기성급 정산 후 잔여공사와 시설물 운영을 시에서 하고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특이사항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안건 1) 舊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
 - 매각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결함.
- 안건 2) 시유지(원미구 중동 1153번지) 매각
 -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 수렴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각 정책으로 판단이 되며, 사업추진 관련 교통영향 평가, 일조권 침해, 분양당시 중동 신도시 주민들의 조성원가 부담 부분 등을 신중히 고려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부결함.
- 안건 4)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 공장 매입
 - 시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어 부결함.
- 안건 5)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
 - 향후 소송결과를 지켜 본 후 재 심사가 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되어 부결함.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 - 안건 1) 舊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 : 부 결
 - 안건 2) 시유지(원미구 중동 1153번지) 매각 : 부 결
 - 안건 3) 국·공유지 교환 : 원 안
 - 안건 4)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 공장 매입 : 부결
 - 안건 5)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: 부결

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

의 안 제255호 의 결 2009. 12. 23 년월일 (제157회)

제출년월일: 2009. 8.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『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』은 다음과 같다.

□ 주요골자

구 분	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	비고		
당초	1. 공유재산(대체취득토지)확보(매입)	회	계	과
제1차	1 부천역1-2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내 시유지 매각 2.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(안)	회 기입	계	과
제2차	1. 옹기박물관 건립 2.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(안) 3. 위브더스테이트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	문호	}예를 }예를 축	할과
제3차	1.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2.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(안)	회 문호	계 라예를	괴 날과

□ 안건요지

(안건1)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

○ 향후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함

(안건2)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(안)

- 영상문화단지(판타스틱스튜디오)내 건립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하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한옥으로 건축함으로써 2008.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볼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 추진
- 2007. 5. 10일자로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, 사업비가 30%이상 변경됨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7 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심사(수립)를 요청하게 됨.

□ 주요내용

(안건1)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

1. 사업개요

- 매입대상 부지현황
 - 위치 : 부천 오정구 여월동 여월택지개발지구내(필지번호 02)
 - 면적 : 1,277 m²
 - 매입예정금액 : 1,324,249,000원(조성원가 m²당 1,037,000원)
 - 현소유자 : 대한주택공사(인천지역본부)

2. 그간의 추진상황

- 2008.06.18 : 제8회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
- 예산
 - 공유재산매입을 위한 2008년 기타 특별회계 재원확보

3. 향후 추진 계획

○ 2008. 08 :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부지매매계약 체결

• 계약금 : 매입금액의 10%(금132,424,900원)

• 중도금 : 계약일로부터 3월이내 40%(금529,699,600원)

- 잔 금 : 계약일로부터 6월이내 50%(금662,124,500원)
-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시설신축 부지로 활용

(안건1)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(안)

1. 사업개요

○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2호(영상문화단지 내)

○ 부지면적 : 총 330,266㎡중 지원시설부지 3,766㎡

○ 건축규모 : 지상1층, 9개동 598.62㎡

• 전시판매장 1(132.30), 공방 5(각 60.00), 공방 2(각 65.61), 화장실 1(35.10)

○ 총사업비 : 2,573백만원(국비 500, 도비 250, 시비 1,823)

○ 사업기간 : 2006. 3 ~ 2008. 8(2년 5개월)

2 조성계획 변경내용

○ 건축구조 : 경량철골조 ⇒ 목구조

○ 총사업비

	소요금액(천원)							
구분		당초 (A)	2007. 12월(B) (제3회 추경)	변경 (C)	증감 (C-A)	증감 (C-B)	증감율 (%)	비고
합기	ᅨ	1,200,000	1,555,398	2,573,625	1,373,625	1,018,227	114	
시설터	1]	1,178,000	1,525,000	2,528,227	1,350,227	1,003,227		
감리티	1]	15,000	20,899	35,899	20,899	15,000		
시설부다	刖	7,000	9,499	9,499	2,499			

※ 경량철골조와 목구조의 3.3m²당(598.62m² 기준)건축비 차이 = 5,613,000원
 → 14,187,000원(한옥) - 8,574,000원(경량철골조)

3 그간의 추진경위

- 2006. 03. 14 : 2006.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계획 통보(도)
 - → 국비(관광진흥개발기금) 500백만원, 도비 250백만원
- 2006. 08. 10 :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
- 2006. 09. 18: 2006. 하반기 지방재정투·융자 심사(조건부)
- 2007. 02. 14 :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명칭변경
 - →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(전통의 거리) ⇒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

- 2007. 05. 01 : 용역과제 심의(원안가결)
- 2007. 05. 10 :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재심의 통과
- 2007. 08. 31~ 11. 20 : 컨셉디자인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시
- 2007. 12. 27 : 시설공사 계약체결(812,720,000원, 고려종합건설)
- 2008. 01. 04 : 공사착공(고려종합건설 →시설공사과, 회계과)
- 2008. 03. 25 ~ 04. 11 : 설계변경 용역(목구조)
- 2008. 03. 27 : 공사 착수(동절기 공사중지 후 해제)
- 2008. 04. 01 : 일괄하도급 승인 [(주)월드공영]

4. 향후 추진계획

- 2008. 07월 건축비, 감리비 추가 계상(1,018백만원)
- 2008. 07월 무형문화재 유치(7개 종목)
- 2008. 09월~10월 공방거리 준공 및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
- 2008. 11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입주

□ 검토의견

(안건1)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

- 공유재산 매각재원의 일부를 대체재산 확보에 재투자 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취득비용을 절감하여
-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토지활용과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함
- 우리시에서 매입의사가 없으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 용도변경 및 공급조치

(안건2)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(안)

○ 당초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량형 한옥(경량철골조)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, 2008.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우리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한옥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건축구조를 목구조로 변경함(2007. 12월 부천시의회).

- 구조변경으로 사업비가 30%이상 증가됨에 따라서 「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」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요 청하게 되었음.
- 건립에 있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(신응수)으로 하여금 가급 적 우리나라 전통한옥에 충실하게 조성함으로써 볼거리(명소)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나아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엑스포기간 중에는 필요한 전시장(기반시설)으로도 병행 활용하고 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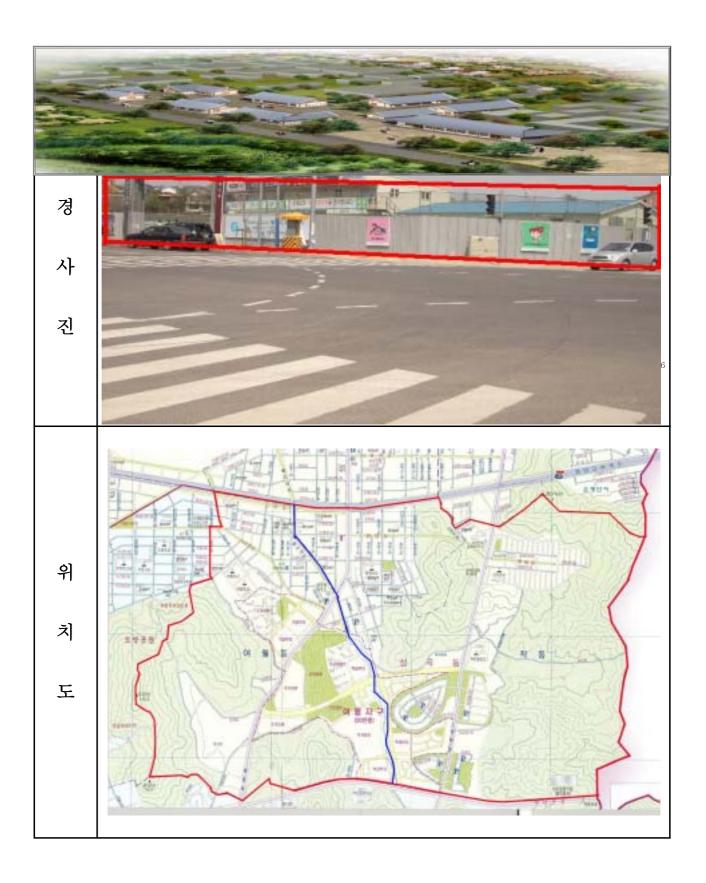
□ 현장사진 및 위치도

- 1.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고공청사 부지매입
- 2.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(신축) 〇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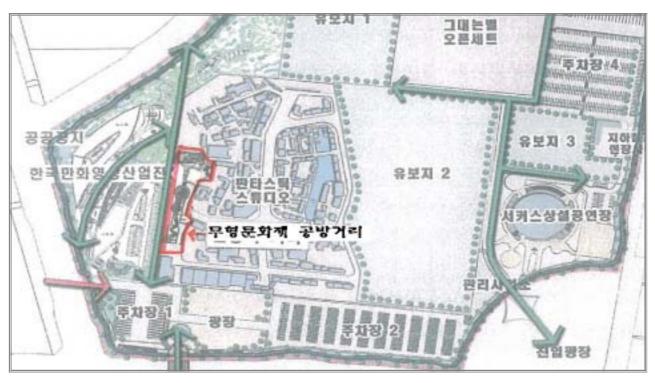


○ 조감도





2.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(신축) ○위치도



○ 조감도

